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2,896,726	13,586,902
일반회계	319,683,916	9,590,517
특별회계	133,212,810	3,996,384
공기업특별회계	32,267,302	968,019
상수도공기업	18,545,014	556,350
하수도공기업	13,722,288	411,669
기타특별회계	100,945,508	3,028,365
이원지구간척사업	5,973,100	179,19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62,617,600	1,878,528
의료급여기금운영	641,477	19,244
주민소득지원사업	1,800,000	54,000
만리포집단시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105,000	93,150
관광경영개발사업	1,012,580	30,377
태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443,829	13,315
동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7,063	1,112
수산자원조성	25,187,859	755,636
도시기반시설	127,000	3,81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93,56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부서에서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